

과징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 및 세부기준 고시, 심결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그 동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제기되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과징금제도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 연구용역(팀장: 서울법대 권오승 교수)을 의뢰(2003. 5월)하여 선진적인 EU,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과징금 기준과 공정위의 현행기준 및 심결례 등을 종합·분석하여 새 기준 시안을 마련(2003. 11월)하였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2003. 11월), 내부회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보완·수정하였다. 특히 2003. 11월부터 과징금 부과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과도하고 급격한 과징금 부과수준의 변화와 이에 따르는 충격을 방지하고 개선안의 실제 운용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원회에 실제 상정되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적용하는 simulation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하여 왔다.

최근까지의 작업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마련한 과징금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처 협의를 지난주부터 시작하였는데, 시행령에는 과징금제도의 주요 골격을 정하고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은 공정위 고시로 정하게 되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경우, 위반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징금 산정의 체계와 방법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부과기준율을 정하였는데, 의무적 조정과징금(2단계)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50% 이내의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하고, 가산한 결과와 당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결정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3단계)은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등의 가중·감경사유를 열거하고 각 사유별로 10~30%의 가중·감경한도를 설정하고, 가중·감경의 합계는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계를 설정하며, 부과과징금(4단계)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부담능력이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현저히 과



중한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50%까지 감경 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 한 후, 세부기준을 정하는 과징금고시 개정 (안)과 함께 2004. 4. 1.부터 시행할 계 획이며, 과징금고시에는 각 단계별로 과징 금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예정 이다. 즉,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을 행 위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기본과징금을 산

정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3단계 중대성 판 단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단계별 부 과기준율도 규정하며, 의무적 조정과징금 을 위한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및 부당이 득의 반영 방법과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위 한 구체적 가중·감경사유 및 사유별 가감 비율 등도 규정할 계획이다.

※ 『과징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는 본지의 '부록(73면 이하)'을 참조하기 바람

공정위, 『하도급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제도를 강화한 개정하도급법(법률 제 7107호)이 2004. 1. 20. 공포되어 4.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방 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 은 하도급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동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 권이 소멸함에 따라 그 후에 진행된 원사업 자의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은 무효가 되 어 직접지급사유의 발생시기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발주자 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수급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였고, 둘

째,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채권이 (가) 압류된 경우,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에 이미 원사업자의 대금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 다수의 수급사업자 채권이 동시에 경합하는 경우 등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 어려운 사유를 직접지급의무 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공탁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셋째, 직접지급사유가 발생 하여 발주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에 비하여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받아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수급사 업자에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 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 위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을 상한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규정하면서, 직접지급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의무 위반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지체없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도록 직접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시행령별표상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조치유형별 하도급벌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즉, 하도급분쟁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벌점을 삭제(0.5→0)하고,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와 신고 또는 직권조사에 따른 경고의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벌점을 감경(1→0.5)하며, 과징금부과의 경우는 단순히 시정명령 하는 것보다는 위법성이 크므로 벌점을 상향조정(2→2.5)하고, 고발벌점도 상향(2.5→3)하였다.

중소하도급업체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법률상의 다툼을 예방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과징금 및 고발벌점의 가중으로 벌점관리의 기본취지인 범위반의 억제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조정벌점을 삭제함에 따라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을 촉진시켜 분쟁조정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경고벌점을 감경하게 됨에 따라 서면실태조사에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04. 2. 6(금) 수신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등 25개 불법 스팸발송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였다.

공정위 노스팸시스템(www.nospam.

go.kr)에 등록된 소비자 신고내용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소재지가 파악된 21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총 179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소비자피해가 큰 위반행위를 한 25개 사업자를 우선 시정조치하였다.

금번 시정조치는 불법 스팸발송사업자



에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엄중 집행함으로써 악성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여나가고, 스팸발송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유도하여 구매권유 광고 메일이나 통화 발송시 사업자 스스로가 자기 신원정보를 정확히 밝히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시정조치 되는 25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100만원~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다만, 단순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하나 이번 사건이 최초의 법집행이라는 점 등을 감안, 자진신고 하도록 시정권고 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판매사업자들의 불법 스팸발송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시정해 나갈 계획이고, 매 6개월마다 노스팸사이트에 신고된 내용을 취합·정리하여 범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계속 스팸메일이나 통화를 발송하거나, 음란물을 발송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판매사업자의 범위반 예방을 위해 (사)한국전자상거래통신판매협회를 통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TV홈쇼핑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3. 8.~4. 3.까지 4주간에 걸쳐 22개 TV홈쇼핑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의 광고행위 등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2003년 소보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접수된 TV홈쇼핑 피해건수는 각각 4,600여건, 8,000여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2003. 11월 소보원이 27개 TV홈쇼핑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 중 16개 제품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은 광고와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소비자들은 상품을 직접 보지 못한 채 광고에 의지하여 구입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일반광고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22개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올바른 정보제공을 유도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TV홈쇼핑사업자의 광고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별 유형별 광고 - 건강 다이어트 미용관련 상품광고, 추천·보증 등을 이용한 상품광고, 수상·인증 등을 이용한 상품광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관련 광고 등 - 를 철저

히 조사할 방침이며, 이번 직권조사를 통하여 허위·과장의 광고행위 등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 『KFTC 경쟁 이슈』 발간·배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번에 「KFTC 경쟁 이슈」를 제작하여 제1호로 “CP, 기업경영의 필수인가?”를 발간·배포하였다.

「KFTC 경쟁 이슈」는 재계,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쟁정책에 대한 정부 내·외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하여 공정위의 주요정책과 현안이슈를 알기 쉽게 해설한 정책 가이드북이다.

이번에 발간된 「KFTC 경쟁 이슈」 제1호 “CP, 기업경영의 필수인가?”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핵심요소와 기업들의 CP 도입현황, 외국의 제도운영 사례 및 공정위의 정책방향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공정위는 「KFTC 경쟁 이슈」 시리즈를 연중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향후 출자총액제한제도,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문

제 해결방안 등 공정위의 주요 정책과 마일리지제도나 MS 메신저 관련 독과점 소송 등 공정위의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경과나 심결사례 등 현안 문제로 부각되는 쟁점에 대해서도 비정기 이슈페이퍼로 수시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정책이슈별로 관련당사자를 경제계, 정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으로 세분하여 「KFTC 경쟁 이슈」를 배포하고 추가 필요시 구독 요청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시에, 공정위 E-Mail 리스트와 같은 정책고객 DB를 활용하여 On-line 상으로도 「KFTC 경쟁 이슈」를 배포하고 아울러 국·영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일반국민들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항공사 마일리지 유예기간 2년으로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한항공이 기축적 마일리지사용 유예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고 보너스제도 변경사유를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주)대한항공에 대한 고발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한항공측의 수정 제출안을 살펴보면, 마일리지 보너스 제공기준의 변경 사유로 ▶관련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국가경제의 심각한 악화, 국가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제도의 현상유지가 어려운

경우 ▶국제적 제휴를 위하여 Global Standards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운임의 변동 등으로 인한 마일리지 보너스 수요의 노선별 편중현상이 심각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들었고, 기축적 마일리지에 대한 종전 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였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보너스 제공기준 상향조정안은 2005. 3.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2004. 2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위는 2004년 2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가 변동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의거하여 2004년 3월 2일자로 변동내용을 당해 회사와 동일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새로 편입된 회사는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각종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04년 2월중 15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3. 2. 현재 342개로 전월 대비 3개사가 감소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33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4. 2. 2. 504개에서 2004. 3. 2. 현재 505개로 1개사가 증가하여 공정거래법상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수는 2004. 2. 2. 현재 849개에서 2004. 2월중 7개사가 신규 편입되고, 9개사가 계열제외 되어 2004. 3. 2. 현재 847개로 2개사가 감소하였다.

[2004. 2월중 계열사 변동 개요]

기업집단	2004. 2. 2	편 입			제 외						증감	2004. 3. 2
		회사 설립	주식취득 및 기타	계	합병	매각	청산	친족 분리	기타	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5개)	345	-	-	-	2	1	-	-	-	3	△3	342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33개)	504	3	4	7	1	1	-	-	4	6	1	505
합계(48개)	849	3	4	7	3	-	-	-	4	9	△2	847

[2004. 2월중 계열사 변동 내용]

◆ 편입 : 7개사(회사설립 : 3, 주식취득 : 2, 기타 : 2)

◆ 제외 : 9개사(지분매각 : 2, 합병 : 3, 기타 : 4)

기업 집단	편 입			제 외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회사명	영위업종	사 유
씨제이	씨제이사운드(주)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공급업	회사설립	-	-	-
	씨제이엔지씨 코리아(주)	"	"	-	-	-
코오롱	코오롱웰케어(주)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제조 및 판매	"	-	-	-
대 한 전 선	(주)쌍방울	내의 제조업	주식취득	-	-	-
	(주)케이아이 파트너스	경영자문	기타	-	-	-
대 성	(주)내일네트워크	TV유선방송	주식취득	-	-	-
동 심	연양농림개발(주)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기타	-	-	-
삼 성	-	-	-	삼성캐피탈(주)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합병
에 스 케 이	-	-	-	은광가스(주)	석유류 매매 및 위탁판매업	합병
한 화	-	-	-	한화소재(주)	부품제조	지분매각
대 립	-	-	-	폴리미래(주)	석유화학 기초 화학물	기타
	-	-	-	폴리미래판매	화학제품도매업	기타
동 제 국 강	-	-	-	신선대컨테이너 터미널(주)	항만공사	지분매각
	-	-	-	피앤씨티(주)	항만하역	기타
동 원	-	-	-	동원식품(주)	농수산물도매업	합병
태 광 산 업	-	-	-	(주)한국케이블 티브이새로넷방송	TV유선방송	기타